

등록번호	의약과-4335
등록일자	2016.2.23.
결재일자	2016.2.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가족보건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미진	박상주	정연훈	이준영	代김종두	02/23 문석진
협 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규제개혁팀장	이창조		
		주무관	김오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서 대 문 구
의약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우울증과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우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I 입법근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

■ 50대 정신건강 검진 상담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5780호(2015.11.20))

II 추진배경

■ 우울증 진료 환자수는 50대에서 가장 높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2012년)

- 우울증 진료환자 중 전체환자의 20.8%가 50대임.(전체연령에서 가장높음)

■ 자살자 비율이 가장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 필요

- 50대는 자살률(10만명당)은 34.6명, 자살자수 비율은 전체 연령대의 20.5% 차지함.

■ 조기 은퇴 등에 따른 50대 우울증의 조기발견 체계 미흡

- 50대는 조기은퇴, 노후 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정신질환 발생이 높지만,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음.

Ⅲ 주요내용

-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지원사업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 정신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정함
(안 제4조 ~ 안 제6조)
- 정신건강검진비 청구 및 지급 규정(안 제7조)
-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검진기관의 검진비 허위 또는 부당 청구시 환수조치 및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안 제10조)

Ⅳ 입법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16.3.2 ~ 3.22(20일간)
- 조례(안) 심의 : 2016.3월 중
- 조례(안) 구의회 상정 : 2016.4월 중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16.5월 중

- 붙임 1. 서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서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